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h1>보도자료</h1>	2017. 2. 16.(목)	
		작성 ·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과제과 과장 서영석 / 사무관 최진수 (Tel. 044-200-2437)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 지원팀 팀장 이민영 / 사무관 신인철 (Tel. 044-200-2665)
* 엠바고 : 2.16.(목) 15:00(회의종료) 이후 사용			

신산업 규제, 114건 걷어냈다.

- '16년 하반기 120건 발굴 과제 중 114건 해결, 현재 62건은 이행까지 완료 -
- 자율차용 안테나 입력기준 완화, 전기능기계 규격 도입 등 신산업 진입기반 조성 -
- 금년은 미래지향적 규제지도 선제 구상 등 전략적 신산업 규제혁신 강화 -

과제
번호
2

□ (사례1) 자율주행차 레이더용 안테나에 입력되는 전력기준이 완화되어 고성능 레이더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그간 전파간섭 영향 등을 우려하여 레이더에 내장된 전체 안테나의 공급 전력을 10mW 이하로 제한하였으나, 안테나당 10mW로 완화하여 여러 개의 안테나 장착이 가능한 고성능 레이더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제
번호
50

□ (사례2) 신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합('16.7월)하여 신의료기술의 시장진입 기간을 단축(최대 16개월 → 3~9개월)한 데 이어서,

- 안전성은 있으나 유효성 근거가 부족한 유망 의료기술도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3년 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사례3) 클라우드 펀딩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 현재는 클라우드 펀딩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를 일반투자자, 적격투자자(근로·사업소득 1억원 초과자 등), 전문투자자로 나누고 있는데, 금년 3월부터는 적격투자자의 범위에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자도 포함하여 소득요건은 충족하지 않더라도 전문성을 토대로 클라우드 펀딩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사례4) 노후건축물의 보수·보강시 탄소섬유 등 신소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ISO)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통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관련 KS 표준을 금년 10월 도입한다.

□ (사례5) 디젤 중심의 농기계 시장에 환경친화적인 전기 농기계가 출시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전기농기계 종합 규격을 마련한다.

□ 정부는 '16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신산업 규제혁신을 지속하여 총 120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114건의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 이는 지난해 3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신산업 생태계의 조성·촉진을 위한 규제개혁'을 기치로 출범했던 신산업투자위원회* (이하 '신투위')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한 결과이다.

* (관련 보도자료) '신산업 규제혁신의 깃발을 올리다'('16.3.18.)
신산업 규제장벽 확 걷어낸다('16.5.18.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 신투위는 융복합·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하여 "첫째, 민간의 개선 건의를 민간이 심의한다. 둘째, 심의는 원칙 개선·예외소명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한다. 셋째, 국제적으로 최소수준의 규제가 되도록 정비한다."라는 세 가지 원칙하에 구성되고 운영되어 왔다.

□ '16년 하반기 신투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5대 신산업 분과*는 유지하되,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16.8월 발표) 등 신산업 분야 추진 동향을 반영하여 가상·증강현실(VR/AR), AI, 핀테크 등 심의 분야를 확대하고 소위원회를 정비**하였다.

* 5대 분과 : ICT융합, 무인이동체,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 심의분야 확대에 따라 총 위원수는 72명('16.3월)에서 80명(2월 현재)으로 증가

- 업계·전문가 간담회(총 21회), 신산업 투자애로 조사(산업부)·지역 순회 애로 조사(미래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하여 총 120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114건은 개선방안을 확정(수용률 95%)하였다. (6건은 개선 불필요 결론)

< 5대 분과별 과제 현황('16년 하반기) >

총계	ICT융합	무인이동체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120건	33	6	34	25	22

-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의 개최 시기가 당초 계획한 '16년 하반기에서 금일로 조정되면서, 정책의 적시성·일관성 차원에서 해당 부처별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관련된 대책을 발표하도록 한 결과, 이행이 이미 완료된 과제는 총 62건(54%, '17.1월기준)에 이른다.
- 과제 소관별로는 금융위(핀테크), 산업부(에너지·신소재), 미래부(ICT 융합), 복지부·식약처(의료기기·바이오헬스), 문체부(VR, 콘텐츠심의)의 6개 부처가 전체 과제의 75%(90개 과제)를 차지하며, 이행방안별로는 9개 과제는 법률 개정, 111개 과제는 시행령 이하 개정이나 표준·규격 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 또한 시장진입(인허가, 표준·규격 등)과 시장활성화 관련 규제가 약 60%를 차지하여 기존 기술·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제도 등을 신산업에 맞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참고로, '16년 신투위의 상반기 성과는 지난해 5월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발표되었고 드론·자율주행차 규제의 대폭 개선 등 총 151건 과제 중 141건의 개선방안(수용률 93%)을 보고하였다. '16년 기준 신투위 운영으로 총 271건의 과제 중 255건이 개선되었다.

*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16.2.17.)시에도, 총 54건 중 53건 선도적 해결

< 상반기 주요 개선 사례 >

- 국민안전·국가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드론을 활용한 신규 사업 전면허용
- 기업 등 개발자가 원하는 전국 어디서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가능
- 전파 출력기준 상향(10→200mW) 등 세계 최초의 사물인터넷 전용망 구축 지원
- 클라우드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물리적 서버·망 분리 규제 개선
- 공유민박 영업가능 일수 확대, GPS 기반 택시미터기 도입 등 O2O 분야 규제개선

□ 정부는 지난해 신투위의 출범·운영이 신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막힌 길을 뚫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올해는 크게 두 방향을 보완하여 신산업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첫째, 지난해 현장과제 중심으로 신산업 규제혁신이 진행된 점을 보완하여 미래지향적 규제지도(Futuristic Regulatory Map)를 선제적으로 구상하는 전략적 접근을 강화한다(Top-down).

- 미래지향적 규제지도(Futuristic Regulatory Map)는 미래에 도래할 신기술·신산업의 전개양상 예측에 기반한 선제적 규제정비계획으로 핵심 신산업의 성장 양상을 예측한 다음, 현존 규제와 해외 선진 규제 수준을 비교 분석하여 기존 제도의 선제적 정비방향과 신규 제도 보완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 (예시)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규제정비 : △도로교통법상 운행기준 정비,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소유주 vs 통신사 vs 제조사) △보험제도 보완 등

- 미래지향적 규제지도가 제시되면 융복합·신산업 제품, 서비스의 시장진입에 있어 기존 규제가 정비되지 않거나, 필요한 제도가 선제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규제지체 현상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둘째, 신산업 현장의 규제애로 발굴 기능을 강화한다(Bottom-up).

- ICT 융합 등 5대 신산업 분야별 전문가 심층 면접, 관련 협회·단체, 관계부처와 협업 등을 통하여 신산업 현장에 산재한 주요 규제 이슈를 파악하고, 해당 규제의 심층분석, 실질적 개선책 마련 등 현장애로를 중점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 (예시) △정보보안인증 중복 규제 △ 데이터수집·활용·분석관련 규제 △임무용 드론·자율주행차 실증 관련 제도 보완 등

- 금일 개최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상기와 같은 신산업투자위원회의 운영성과와 향후 계획이 보고되었다.
- 금년 중 추진될 주요 개선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120개 상세 과제목록은 별첨4와 같다.

과제
번호
↓

자율주행차

- 2 ○ (레이더) 자율주행자동차 레이더*에 내장된 안테나의 입력전력이 현재 전체 상한으로 설정(10mW)되어 있으나, 안테나별 입력기준(10mW)으로 완화되어 다중 안테나 설계가 가능해져 레이더의 해상도·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17.3월).

* 자율주행차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센서로 다양한 환경조건에도 안정적으로 전방 도로 상황의 실시간 감지로 차량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

클라우드 펀딩

- 116 ○ (투자자격)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자도 적격 투자자 수준으로 투자한도(연 2천만원)를 확대 적용한다.
- 현재 클라우드 펀딩의 참여자는 일반투자자, 적격투자자(근로·사업소득 1억 원 초과자 등), 전문투자자로 나뉘는데, 적격투자자의 범위에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자도 포함되어,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클라우드 펀딩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17.3월).

유전체·바이오

- 43 ○ (유전자검사) NGS 임상 유전자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고, 폐암, 백혈병 등 임상적 유효성이 큰 질환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17.3월).

*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 : 차세대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 (생산) 생산공정이용시설 내 유전자변형 동·식물 활용시 국가 안전관리가 가능해지고(현 법령은 유전자변형미생물만 허용, '17.12월)
- 인체 및 동물 검용 의약품의 제조 시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하여 인체 및 동물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일부 의약품의 경우에는 허가 요건과 절차가 완화된다('17.6월).

의료기기 · 의료기술

- (심사) 시장진출의 소요 기간 및 비용의 경감을 위해 국내 소재 외국의 제조품질관리(GMP) 심사기관이 우리의 제조품질관리(GMP) 심사기관에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17.6월).

-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질병 예측 또는 진단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기 분류기준, 임상적 유효성 등 허가심사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17.3월).

- (평가) 신의료기술의 시장진입과 관련하여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합운영하여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최대 16개월→3~9개월)된 데 이어 안전성의 우려가 없는 유망 의료기술을 조기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추가로 열린다('16.11월).

- 안전성은 있으나 유효성의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특정 의료기관*에서 3년 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유통) 온라인 의료기기 유통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시설 등 유통품질 관리기준이 완화되고('17.9월),

-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의료기기에 첨부되는 제품설명서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16.12월 의료기기법 개정안 국회제출)

의료정보

- 55 ○ (정보) 전자의무기록의 클라우드 보관이 가능해지면서 클라우드
- 56 보관 개인의무기록을 환자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유·무선 방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17.9월).
- 57 - 개인 건강검진 정보도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본인이 디지털 형태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되었다('17.1월).

에너지·신소재

- 75 ○ (태양광)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시 요구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기와 관련,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사업부지, 토지이용계획 등)이 제출되어 평가가 가능한 단계에서 협의 요청이 가능해지고('17.2월),
- 74 - 태양광 발전소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주 요건을 완화(현행 1천킬로와트 이상 → 3천킬로와트 이상)하여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17.12월).
- 92 ○ (신소재) 노후건축물의 보수·보강에 탄소섬유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관련 KS 표준이 도입된다('17.10월).
- 77 ○ (전기농기계) 환경친화적 전기농기계가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전기 농기계 관련 종합 규격을 마련할 예정이다('17.12월).
- 78 ○ (화학흐름전지) 차세대 전지로 대두되고 있는 화학흐름전지의 상용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전성 평가 기준 등 표준이 제정된다('17.12월).

과제
번호
↓

□ 참고로, 1월말 기준으로 이행이 이미 완료되었으나(총 62건, 54%), 신산업 활성화에 의미가 큰 주요 과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별첨3 참조)

1

3

○ **(자율차전용 주파수)**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V2X* 전용주파수 (5.8~5.9 GHz) 및 레이더용 전용주파수(77~81 GHz)를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파수로 할당하였다('16.9월).

* V2X(Vehicle to everything) : 운전 중 도로 인프라 및 다른 차량과 통신하면서 교통상황 등의 정보를 교환하거나 공유하는 기술

20

○ **(로봇의 승강기 제어)** 로봇의 무선 통신 제어에 의해 승강기를 호출하고 운행시킬 수 있도록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해설서를 마련하였다('16.10월).

21

○ **(사전동의규제 완화)** 명함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B2B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전 수신 동의 없이 광고 전송이 가능해졌다('16.12월).

22

- 또한, 사업자가 요금고지서 등에 포함된 간단한 광고안내 정보는 일정 요건하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예외로 인정되어 사전 수신동의와 (광고)표기 의무도 완화된다('16.12월).

42

○ **(유전자검사)**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임상검사실 인증제를 통하여 최첨단 연구장비도 임상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16.12월).

54

○ **(핀테크형 보험상품)** 스마트기기, 핀테크·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건강관리 연계 보험상품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였다('16.12월).

<별첨>

1. 주요 개선과제 사례
2. 신산업투자위원회 개요
3. 이행완료 과제 목록(총 62건, '17.1월 기준)
4. 신산업투자위원회 개선과제 목록(총 120건)

과제
번호
2

[1] 다중 안테나 설계를 통해 자율차용 고성능 레이더 개발 가능

A기업은 자율주행자동차에 장착하는 레이더를 개발하는 업체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레이더를 통해 전방의 물체를 감지해 차량충돌 등을 방지한다. 레이더에는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고 전방의 물체를 정확히 판별하기 위해서는 안테나의 성능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안테나의 성능과 관련 있는 안테나 공급전력이 레이더 안테나 전체를 기준으로 10밀리와트(mW)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기준 하에서는 고성능의 레이더를 생산할 수가 없다. 하지만 현재 레이더 안테나 전체의 입력전력 공급기준 상한(10mW)이 안테나 개당 입력전력기준(10mW)으로 완화되었다. 고성능 다중 안테나 설계를 통해 고해상도로 물체를 감지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미래부, 무선설비기술기준 개정, '17.3.)

(개선 전) 안테나 입력기준(10mW) 규제로 자율차용 고성능 레이더 생산에 한계
 (개선 후) 다중 안테나 설계가 가능함에 따라 자율차용 고성능 레이더 생산 가능
 ➔ 고해상도의 물체 감지가 가능하고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

과제
번호
116

[2]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조건 완화

A씨는 금융투자회사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투자 관련된 자격증도 취득하였다. 평소 크라우드 펀딩에 관심이 많던 A씨는 일반투자자 자격으로 크라우드 펀딩 투자를 하던 중 여력이 남아 추가투자를 하려 했으나 투자한도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 투자한도가 보다 높은 '적격투자자'의 경우도 '근로.사업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 등'이라는 자격요건이 있어 결국 추가 투자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자도 자격증, 경력 등 소득 외 요건을 통해 적격투자자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A씨는 다양한 크라우드 펀딩 상품에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17.3.)

(개선 전) 개인 적격투자자는 소득(금융소득, 사업.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제한
 (개선 후) 적격투자자 요건에 금융투자회사 근무 경력이 있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도 포함
 ➔ 투자 잠재력이 있는 투자자 확보를 통해 크라우드 펀딩 시장 활성화

[3] 클라우드 펀딩 전용 주식거래시장 개설

K씨는 클라우드 펀딩에 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금을 회수하여 재투자를 하려고 했으나 클라우드 펀딩으로 발행한 증권은 취득 후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어 있었다. 다행히 클라우드 펀딩 스타트업 전용주식거래 시장(KSM)이 개설되어 KSM에서 거래되는 증권은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었다. 이를 통해 K씨는 KSM에서의 전매로 원활하게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재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위, 증발공 규정 개정 및 KSM 운영규정 제정, '17.3.)

(개선 전) 클라우드펀딩 발행 증권 취득 후 1년 동안 전매 제한

(개선 후) 스타트업 전용주식거래시장 개설로 1년 내 증권 전매 가능

☞ 신속한 투자자금 회수로 투자수익금의 재투자 유도

[4] 명함으로 알게 된 이메일로 B2B 광고전송 시 수신자 사전동의 면제

스타트업 A기업은 IoT 통신기기에 들어가는 무선칩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이 업체는 IoT 관련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에 제품 홍보를 하기 위해 이전에 받은 명함으로 알게 된 이메일을 활용하여 홍보물을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수신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하여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는 평소 주고받은 명함이나 서면으로 직접 제공받은 정보로 B2B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이 자사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게 되어 마케팅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방통위, 불법스팸방지안내서 개정, '16.12.)

(개선 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B2B 광고전송시 상대방의 사전동의 필수

(개선 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B2B 광고전송시 상대방의 사전동의 면제

☞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의 상품홍보 활성화로 시장진입 촉진

[5] 의료기기의 온라인 유통을 위한 시설 등 기준완화

A기업은 의료기기 유통업체이다.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온라인 유통채널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식약처의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의 시설 및 설비 기준 등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을 마련하는 수준으로 추가 투자를 해야 했기에 온라인 의료기기 유통을 포기했었다. 그러나 '의료기기 온라인 유통을 위한 규제 완화'가 시행되고 나서 시설 및 설비 기준 등을 온라인 유통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유통채널을 운영하니 구매의 편리성 때문에 국내 사용자들의 주문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이 온라인을 통해 한국 의료기기 정보를 쉽게 접하고 주문을 원스톱(one stop)으로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의료기기 수출도 증가하게 되었다.

(식약처, 의료기기 유통품질관리 기준 개정, '17.9.)

(개선 전) 온라인 의료기기 유통업에 오프라인 유통업과 동일한 기준 적용
(개선 후) 온라인으로만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체에 적용되는 규정 마련

☞ 의료기기의 온라인 국내 판매 활성화 및 온라인 해외 유통 가능

[6] 복합재료 보수·보강 KS 표준 도입

A기업은 탄소섬유 등을 활용해 구조보강용 복합재료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복합재료를 이용한 섬유 구조보강재는 기존의 보수·보강 공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나 이를 활용 할 수 있는 규격이나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판매 등 사업 운영이 어려웠다. 그러나 노후건축물의 보수·보강과 관련된 한국산업표준(KS)이 글로벌 규격 수준으로 도입됨에 따라 A기업은 국내 시장 판로 개척 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해외 진출 가능성도 엿볼 수 있게 되었다.

(산업부, KS표준 제정, '17.10.)

(개선 전) 복합재료를 활용한 콘크리트구조물의 보수·보강 관련 규정 부재
(개선 후) 복합재료를 활용한 콘크리트구조물의 보수·보강 관련 KS표준 도입

☞ 신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신산업 시장 창출

[7] 신규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산정 시 적용배수 개선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A사는 다년간의 연구와 투자를 통해 최근 새로운 치료재료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시장 판매를 위해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후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하였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평가되고 제조원가의 1.78배가 적용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상한금액을 통보받았으나, A사는 고민에 빠졌다. 건강보험 적용은 받게 되었으나 품질향상 업무, 의료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모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결정된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으로 의료기관에 판매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치료재료별 특수성을 인정한 '신규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산정 방식'이 새롭게 적용된 후 A사는 개발한 치료재료에 대해 적정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산정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우수 치료재료의 시장 접근성과 기술개발에 따른 비용회수 예측성이 개선되었고,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다.

(복지부,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17.6.)

(개선 전) 신규 치료재료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상한금액 산정 시, 제조원가의 1.78배(최대)를 일괄 적용

(개선 후) 치료재료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치료재료 적정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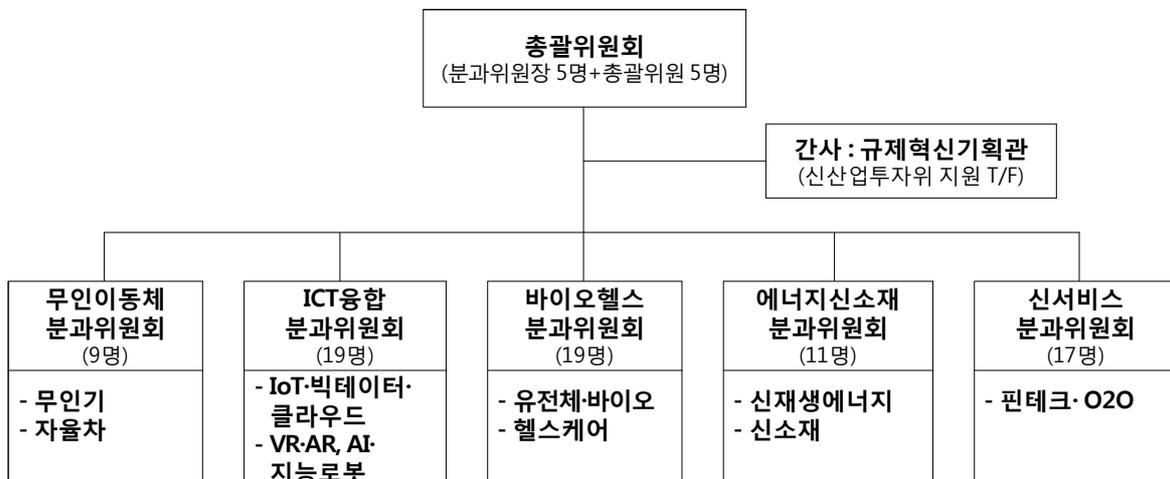
- ☞ 치료재료별 특수성이 반영되고 적정 비용을 인정받게 되어 치료재료 관련 국내외 자본의 기술 투자 및 연구개발 활성화

별첨2

신산업투자위원회 개요

- (배경)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칙 개선, 예외 소명'의 새로운 규제개선 방식을 도입하여 관련 규제의 적시·신속 개선 추진
- (구성) 80명의 민간전문가로만 5개 분과위와 총괄위 구성
 - (분과위원회) 무인이동체, ICT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의 5개 분과 구성(필요시 산하에 세부 소위원회 운영)
 - (총괄위원회) 각 분과위원장과 별도 총괄위원으로 구성
- (심사) 분과위에서 1차 심의, 총괄위에서 2차 심의하는 2단계 심의 방식으로 운영
 - 관계부처 참여하에 심층 토론하고, 위원회가 실질적 개선방안을 결정하여 관계부처에 권고하면, 관계부처는 제도개선
 - * 건의과제는 협회·단체, 기업, 부처,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로 수집·발굴
- (처리) 미해결 과제는 규제조정회의(의장: 국무조정실장)에서 재심의
 - 이후 전체 과제의 처리결과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또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하고 규제포털(www.better.go.kr)에 공개

< 신산업투자위원회 구성 >



별첨3**개선과제 이행완료 목록** (62건, '17.1월 기준)

과제표 번호	과제 제목	소관부처
무인이동체 (3건)		
1	자율주행차 V2X 전용 주파수 할당	미래부
3	자율주행차 레이더용 주파수 할당	미래부
6	무인항공기 특별감항증명서 발급대상 확대	국토부
ICT융합 (21건)		
8	360도 VR영상 제작시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문체부
10	VR체험시설 내 휴게음식점 동시 입점 허용	안전처
11	VR게임 자체등급분류 가능업체 선정기준 완화	문체부
14	VR게임 등급분류 심의비용 인하	문체부
15	VR컨텐츠 자율심의 권한 확대	문체부
17	스마트TV 게임앱 사전등급분류 개선	문체부
18	게임의 버전업, 패치 시 게임등급분류 추가심의 면제	문체부
19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실감형콘텐츠(VR/AR) 검색 용이	통계청
20	로봇의 승강기 무선제어 허용	안전처
21	B2B 마케팅에 대한 사전동의 규제 완화	방통위
22	요금고지서 등에 추가적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자 사전동의 면제	방통위
24	IoT 등 신규서비스의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기준 완화	미래부
26	무선 송수신용 통신모듈 적합성인증 절차 간소화	미래부
28	텔레매틱스 서비스, 부가통신사업자 범주에 포함	미래부

과제표 번호	과제 제목	소관부처
29	융합신제품 위한 물품분류체계 개선	조달청
30	한국표준산업분류 제.개정 기간 조정	통계청
31	국가과학기술분류체계에 '재난안전 과학기술' 분야 별도 신설	미래부
32	클라우드시스템의 정보보호제품 인증기간 단축	미래부
37	수출활성화를 위해 해외기업 신용등급평가 인정 기준 재정립	중기청
38	공장 내 부대시설의 범주에 휴게음식점을 포함할 필요	산업부
39	저작물의 개인적 활용을 위한 전자문서 복제 허용	문체부
바이오헬스 (14건)		
43	NGS 임상유전자검사의 급여/비급여 코드 부여	복지부
53	건강관리서비스의 활성화	복지부
54	건강관리 스마트기기 제공에 대한 판촉물 규제완화	금융위
57	디지털화된 개인의료정보의 제공	복지부
58	의료정보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익명화 가이드라인 명확화	복지부
59	의사-의료인 間, 의사-환자 間으로 원격진료범위 확대	복지부
61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관 지정 확대	식약처
63	스마트헬스케어 앱의 인허가 간소화	식약처
65	3D 바이오프린팅 의료기기 품목 등록 방안 마련	식약처
66	3D 프린팅 특허 우선심사 대상 포함 및 비용 지원	특허청
68	의료기기 첨부문서(제품설명서)의 인터넷매체 허용	식약처
69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의 임상윤리위원회(IRB) 심사 기회 확대	복지부
71	정부 R&D과제 시 지적재산권 출원비의 간접비 한도 확대	산업부

과제표 번호	과제 제목	소관부처
73	스마트디바이스의 전자파 방사기준 관련 KC인증 부담 경감	미래부
에너지·신소재 (11건)		
79	발전용 연료전지 열 활용 규제완화	환경부
81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환경부
82	NRE-H 시스템 안전 관련 중복검사 완화	고용부
83	가스공사 공급관리소 내 연료전지 설치 허용	산업부
84	수상태양광 환경영향평가 적용 기준 완화	환경부
88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SMP+REC) 도입	산업부
91	신소재 방탄제품의 국내 시험·인증 방안마련	국방부
94	바이오 연료개발 연구시설에서의 제품판매에 대한 제도 마련	산업부
95	국내 위탁생산업체에 외국회사의 주재원 파견 허용	법무부
96	국가산업단지 입주 시 업종변경 제한 완화	산업부
98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 기간 단축	환경부
신서비스 (13건)		
101	로보어드바이저 도입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금융위
102	핀테크 기업의 전문외국환업무 취급기관 지위 인정	기재부
104	비대면 금융거래 인증 절차 간소화	금융위
105	금융위 등록 필요대상 대부업자 기준 완화	금융위
106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보증 실시	금융위
107	P2P대출 방법 다양화	금융위
108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	금융위

과제표 번호	과제 제목	소관부처
110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문업 진출 확대	금융위
112	금융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활성화	금융위
114	클라우드펀딩 환매금지(1년) 규정 폐지	금융위
115	클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	금융위
118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사업자의 자문 허용	금융위
119	클라우드펀딩 발행증권과 예탁결제원 관련 업무 간소화	금융위